



논산을 새롭게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

제224호

**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23. 11. 15.

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24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11. 15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제안설명자 : 건강증진과장

1. 개정이유

과태료를 시대 흐름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, 기 지정된 금연 구역에 대한 관련법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여 금연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수정 (안 제5조제1항)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수정하여 표기

나. 금연 구역 지정 해제 (안 제5조제1항제1호)

- 제5조제1항제1호 중 「주택법」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,
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4항제12호의 어린이놀이시설과 동일한 용어로 법과 조례에 중복 등재되어 있어 삭제함

다. 금연 구역 관련 용어 정비 (안 제5조제1항제2호)

-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마련되고 「학교보건법 시행령」에서 이와 중복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내용을 삭제함에 따라
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” → “교육환경보호구역”, “절대정화구역”
→ “절대보호구역” 으로 용어를 정비함

라. 과태료 인상 (안 제10조제1항)

- 제10조제1항 과태료 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 【기획감사실-11681호(2023.11.01.)】

2) 성별영향평가: 해당없음 【복지정책과-32456호(2023.10.30.)】

3) 규제심사: 규제심사 대상아님 【예산실-12202호(2023.10.18.)】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3. 10. 11. ~ 2023. 10. 30. 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5)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(041-746-2653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5항”을 “제9조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공원 및 「주택법」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”를 “공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”을 “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

제10조제1항 중 “3만원”을 “5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건 강 증 진 과 장	이 혜 란
	건 강 정 책 팀 장	이 규 화
	담 당 자	정 은 비 (746-8054)

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제3항에
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
징수 한다.

② (생략)

--- 5만원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안 제7조(금연구역의 표시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 비용(과태료 인상금액 반영)

나. 추계결과

구 분		설치개수	단가(원)	금액(천원)
합 계		868		43,400
안내 표지판 설치	도시공원	69	50,000	3,450
	학교절대정화구역	63	50,000	3,150
	주유소, 가스충전소	105	50,000	5,250
	버스정류소	616	50,000	30,800
	택시승차대	15	50,000	750

※ 재원조달방안 : 전액 시비

3. 작성자

건강증진과장 이 혜 란

〈연도별 비용추계표〉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 입	43,400	0	0	0	0	43,400
시 비	43,400	0	0	0	0	43,400
세 출	43,400	0	0	0	0	43,400
400 01 시 설 비						
○ 안내표지판 설치	43,400	0	0	0	0	43,400
재원 조달	43,400	0	0	0	0	43,4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 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43,400	0	0	0	43,400
	지방세	43,400	0	0	0	43,4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

□ **국민건강증진법**

제3조(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,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·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12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

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4조(과태료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.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

□ **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**

제8조(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)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에 정지 경계(이하 “학교경계등”이라 한다)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·고시하여야 한다.

1. 절대보호구역: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(학교 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)
2. 상대보호구역: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

붙임3

他 시·군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현황

시·군명	조 례 명	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	비고
천안시	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	5만원의 과태료	
당진시	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	5만원의 과태료	
아산시	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	5만원의 과태료	
부여군	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	5만원의 과태료	
제천시	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	5만원의 과태료	
서산군	서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	5만원의 과태료	
태안군	태안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	5만원의 과태료	
청주시	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	5만원의 과태료	
옥천군	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	5만원의 과태료	
충주시	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	5만원의 과태료	